

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
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1. 8. 3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371호로 2021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시행 '19. 6. 12.)으로 건강가정
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등
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 정비 (안 제6조)

나. 위탁기간 변경 (안 제10조제3항)

다.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
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개정 (안 제10조제5항)

라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 6. 10. ~ 6. 30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시행 '19. 6. 12.)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6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
-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, 제5항에서는 위탁운영 시 준용이 되는 근거 조례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과 위탁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건강가정기본법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2 사회복지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 ~폐. (생략)

허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제1조의2(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)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허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

1.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4.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